

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산설 2011.9.9>

연구실사고 조사표

기관명(주소)	[삼육대학교] 139-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		
사고일시	2015-05-18 18시 0분	사고장소	제2과학관 206-2호 분자미생물학 및 영양유전체 학연구실
인적 피해	1. 성별: 남, 나이: 29, 신분: 대학원생, 부상의종류: 화상, 상해부위: 팔, 치료예상기간: 30, 완치여부: N		
물적 피해	약 원		
사고원인 및 발생경위	1. 사고원인 : 2. 불안정한 행동 / 6. 유해, 위험물 취급 부주의 실험준비를 위해 autoclave기기를 사용하였고, 기기의 작동이 멈춘 뒤 기기안에 들어있는 광구병을 꺼내다 광구병의 뚜껑이 튀어올라(평소보다 조금 느슨하게 잠긴 것으로 추정됨) 광구병 안에 들어있던 배지액이 오른쪽 팔에 닿아 화상을 입음 1. 발생형태 및 경위 : 5. 생물 / 4. 기타 / 고온의 배지액에 의한 화상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경에 제2과학관 206-2호 실험실에서 실험준비를 위해 autoclave기기를 사용하였고, 기기의 작동이 멈춘 뒤 기기안에 들어있는 광구병을 꺼내다 광구병의 뚜껑이 튀어올랐고 광구병 안에 들어있던 배지액이 오른쪽 팔에 닿아 화상을 입음		
조치현황 및 향후계획	1. 담당 교수 및 조교에게 사고 사실 알림 2. 담당 조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알림 3. 사고자는 근처 병원에서 치료 진행 중 4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현장 조사 및 현장 안전교육 실시 5. 연구실안전공제 보험을 통하여 보험청구를 진행 중		
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	1. 사고 사실을 공표하여 동일한 사고 예방 2. 실험 중 보호구 착용 및 주의 교육		

관계자확인 (2015년 06월 16일)	연구책임자	(서명 또는 인)
	연구실 안전관리부서장	(서명 또는 인)
	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	(서명 또는 인)